

2

2019

• 통권 426호 •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가정상담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lawhome>



△ 지난 1월 18일 본소 강당에서 2019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지부 신년 워크숍이 열렸다.
(관련기사 31면)



△ 본소 교육부에서는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15시간의 「법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관련기사 32면)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동백〉

- 4 • 이 달의 메시지
- 6 • 특집 I | 201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8 • 특집 II | 북한 가족법의 이해
- 22 • 가정폭력상담실
- 25 • 상담소 소송구조 주요사건 정리
- 26 • 결혼과 인생(192) 영화 이야기
몬스터 콜 _ 김용언
- 28 • 임상실습 소감문
- 30 • 좋은 책
안녕 주정뱅이
- 31 •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 34 • 지부 소식과 상담통계
- 36 • 백인번호사단 소송구조

* 원고 넘쳐 기획연재는 쉽니다.



이 달의 메시지



창립 63주년의 해에 '법률구조'를 다시 생각하며 -
.....
상담소의 역사가 곧 우리나라 법률구조의 역사입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법률구조의 사전적 의미는 “도움이 필요한 극빈자들에게 무료로 또는 명목상의 액수 정도의 비용만 받고 행하는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현대 시민사회의 국가적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기 위해 행해지고 있는 법률구조사업은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의 한 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 국민 기본권의 문제와 함께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법률복지를 실현하는 일이 곧 법률구조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1958년 국제변호사협회가 국제법률구조협회의 설립을 후원했다는 기록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5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법률구조사업을 시작한 이래 1987년 법률구조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법무부 산하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으며 상담소 또한 1988년 민간단체로는 최초로 법률구조법인이 되었습니다. 상담소 창립 32주년이 되는 해의 일이었습니다. 즉 1956년 상담소 창립 이후 국제법률구조협회가 설립되었고 또한 상담소가 30년 이상 법률구조 활동을 펼치면서 법률구조법의 제정을 이끌어내어 정부 주도의 법률구조 기관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창립 63주년을 맞는 상담소는 법률상담이란 말조차 생소하던 1956년에

문을 열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특히 가정 내에서 고통을 겪는 가족구성원의 인권회복을 위한 법률구조 활동을 시작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가정법원의 설치를 주장했고, 법률구조법의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폐지와 호주제 폐지로 대표되는 가족법의 제정과 개정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가정문제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 사업과 법의 생활화를 위한 법 교육 등의 활동을 끊임없이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의 토대가 된 것이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등의 법률구조 사업입니다. 이렇듯 상담소의 역사가 곧 우리나라 법률구조의 역사이며 이것이 저를 비롯한 상담소 모든 구성원들의 자부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법률구조의 역사적 출발점인 상담소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우연과 필연의 산물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일찍이 차별받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자각했던 이태영 선생님은 우리나라 여성으로서 최초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정치적 격랑 탓에 법관으로 임용되지 못하였으며 이 일은 곧 상담소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남성 중심의 법과 제도, 관습에 의해 억압과 구속으로 점철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땅의 여성들은 상담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상담소는 이 같은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여성을 넘어 가정 내·외에서 꾀박받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복리를 위한 가정문제 전문 법률구조기관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성문제연구원이라는 민간단체의 방 한 칸을 빌어 상담과 운영 전반을 자원봉사에 힘입어 시작한 상담소입니다. 6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사업을 구상하고 체계를 세워 시작한 일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상담을 하다 보니 법의 제정과 개정이 필요했고, 가족구

성원 각자의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학교, 할머니 할아버지 학교가 중요한 교육 사업이었다면 근래에는 가정폭력 상담과 피해자, 행위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그리고 비혼모들을 위한 교육과 캠프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유연성과 창의력은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두고 자발적인 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민간단체로써 상담소가 가진 큰 장점이라 할 것입니다.

창립 63년의 해를 맞이하는 동안 지금까지 상담소는 민간단체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가정문제에 관한 전문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국가가 주도하여 만든 기관과 조직이 있고 그 역할이 있다면 그에 못지않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에게 유연성과 친근함 그리고 용이한 접근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단체의 역할은 어찌 보면 국가기관이나 조직보다 더 깊이 국민들 마음속을 파고들어 내실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는 민간단체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상담소야 말로 가정문제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한 걸음 더 빠르고 그 사안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역사와 업적을 통해 검증된 기관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상담소와 같은 민간 기관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뒷받침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복지국가로써의 위상을 더욱 실효성 있게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얼마나 긴밀하게 효율적으로 함께 일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 집 ①

201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3주년의 해

가정문제 전문상담기관이며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우리 사회 가족 문제의 현실을 기반으로

법률구조사업의 내실과 안정적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법률상담에 관한 라디오 광고 계속하고 다양한 홍보 방안 개발

1956년 문을 열어 창립 63주년의 해를 맞이하는 상담소는 우리 사회 가족 문제의 현실을 기반으로 올해에도 변함없이 법률구조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안정적 활성화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다. 상담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가정문제 전문상담기관이자 법률구조사업의 창시자로서 언제나 한 발 앞서 가정문제를 진단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올해도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는 물론 이의 연장선에서 가족법 개정운동에 앞장설 것이며 서울가정법원 등의 출장상담과 인터넷 상 법률상담 등을 통해 법률구조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더욱 활성화 하여 우리 사회 모든 가정과 가족구성원들이 평등한 가운데 법률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임상실습 및 출장 법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법 교육을 활성화하여 법의 생활화에 적극 나서고 사회의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문제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및 연구·출판·홍보 사업도 변함없이 충실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2018년 11월 정기 후기 이사회를 통해 확정된 2019년도 사업계획을 요약·정리 하였다.

법률구조 사업

1)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야간상담 등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상담을 더욱 충실하게 하도록 내실화를 기하고 다문화 가정으로 대상으로 한 영어법률상담, 심리상담의 확대, 쉼터, 사회복지 기관 등의 순회상담을 비롯해 법원위탁 협의이혼전상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등에 관한 소송구조와 가정폭력피해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양육비 청구 등에 대한 소송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2)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및 교육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개별·부부·가족상담 및 음주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인 등지교실 및 부부캠프와 피해자 자조모임인 라오니 모임 등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및 성행교정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여 실시한다. 상세한 프로그램을 다음 장에 안내하였다.

3) 법률계몽사업

법의 생활화와 가정 내 양성평등, 가정의 민주화를 위해 생활법률강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법률해설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배포, 널리 홍보하며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매체 및 본소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계몽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2017, 2018년도에 이어 상담소의 법률상담에 관한 라디오 광고를 지속한다.

법 개정 및 제정 운동

가족법 개정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이에서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심포지엄,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가족법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또한 개정 가족법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지부설치 및 지원사업

법률구조 사업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지부를 신설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지부 실습생 지도, 지부 소장 간담회와 임직원 재교육 등을 통해 상담의 질적 제고 및 지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부 순회 점검 및 상담 및 통계 프로그램의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교육 및 예방·치료사업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현실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하게 운영하고, 법무부 지정 법문화진흥센터로써 법 교육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출장 법 교육, 전문가를 위한 전국순회 교육, 교원직무연수, 학생들을 위한 법 교육 등을 더욱 확대 실시. 또한 2개월에 한 번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한부모 가정 특히 비혼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법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또한 법대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임상교육, 사회복지학과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임상실습, 사법연수원생 상담봉사, 대학생 봉사학점 이수 등도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조사·연구 사업 및 심포지엄 개최

상담을 통해 드러난 가정의 문제를 근거로 조사·연구를 활성화하여 이를 가족법 개정이나 제정으로 이끌어서 가정의 민주화 나아가 가족구성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심도 깊은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자료실 운영

법률, 가정, 여성관련 전문 도서 및 기타 자료를 수집하여 전문 자료실로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교류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서수종을 확대 하며 서고 및 각종 파일과 행정박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출판·홍보 사업

2018 개정 가족법 홍보 브로슈어 발행 등 가족법 개정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법의 생활화를 위한 출판 및 홍보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전산

상담 프로그램 및 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가족법개정운동본부의 홈페이지 유지·보수 작업, 상담소 홍보를 위한 웹 메일 편집 및 발송,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상담소 홍보를 연중 지속한다.

특집 2

201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 지부 신년 워크숍 강연*

북한 가족법의 이해

이 은 정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머리말

이 글은 북한의 가족법과 상속법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법체계상 친족법과 상속법은 민법전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고, 가족관계와 관련된 법에는 가족법 이외에 상속법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 이와는 달리 북한은 별도의 가족법전(1990)과 상속법전(2002)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 법체계에 따라 가족법과 상속법을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북한에서는 가족법과 상속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관련 분쟁에 대하여 사회주의 법리에 기초하여 이를 해결하여 왔으므로, 북한 가족법의 내용은 법 규정 이외에도 다음의 주요 북한 문헌들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 조선가족법(조일호, 교육도서출판사, 1958)
- 공화국 민법의 발전(서창섭, 우리나라 법의 발전, 국립출판사, 1960)
- 가족법(김정금,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참고자료(필자미상, 출판관계미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사규정과 관련한 자료(필자미상, 출판관계미상).
- 민사법사전(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제도에 대한 연구(문철만/김정숙, 법학연구논문집 22, 조선사회과학학술집 415 법학편, 사회과학출판사, 201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제도(리송녀, 조선사회과학학술집 373 법학편, 사회과학출판사, 2013)

또한 국내의 북한 가족법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 신영호, “북한 가족법의 체계와 특색”, 북한법의 체계와 특색, 세종연구소, 1994.
- 최달곤, 북한 민법의 연구, 세창출판사, 1998.
- 북한의 가족법, 법원행정처, 1998.
- 이은정, 북한 가족법의 변화와 전망, 북한정권 55년 : 북한법제의 변화와 전망, 북한법 연구회/국민대 북한법제센터/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 2003.
- 신영호, 북한 상속법의 동향과 평가, 분단 60년 북한 법

* 지난 1월 18일 본소 강당에서 열린 전국 지부 신년 워크숍의 특강 내용, 〈참고문헌〉만 생략하였다.

- 의 어제와 오늘, 북한법연구회/국민대 법대 북한법제연구센터/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 2005.
- 김영규, “최근 남북한 가족법의 변모와 그 접근 가능성”, 법학논총 제20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이은정, “북한 가족법과 상속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 북한정권 60년: 북한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 북한법연구회/국민대북한법제연구센터/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 2009.
 - 문흥안, “북한 가족법제의 동향과 남북 가족법제 통합의 방향, 북한법제 동향과 남북 법제 통합의 방향”, 북한법연구회/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 2014.
 - 북한 가족법 주석, 법무부, 2015.
 - 문흥안, “분단과 남·북한 친족법의 변화”, 가족법 연구 제29권 3호, 2015.
 - 신영호, “남북한 가족법의 변천과 남북통일 후 가족법의 미래상”, 가족법 연구 제29권 3호, 2015.
 - 이은정, “분단경험과 남북한 상속법 - 북한 상속법을 중심으로 -”, 가족법 연구 제29권 3호, 2015.

여기서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해석론은 생략하고 법 규정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가족법(Ⅱ), 상속법(Ⅲ)의 순으로 정리한다.

II. 가족법

1. 총설

(1) 연혁

북한은 정권수립(1948)전인 1946년 이미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였으며, 동법 제9조는 ‘본 법령의 공포

와 동시에 조선여성의 권리에 관한 일본제국주의법령과 규칙은 무효로 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이전의 혼인규정이 그 효력을 전면적으로 상실하게 되자,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 법령과 규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거의 40년간 계속되었으며 ‘민사규정’(1986)의 제정으로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되게 된다. 민사규정은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개인재산관계, 공민과 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민사거래관계, 손해배상의 원칙과 질서도 규제하였으나 시행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이후 민법(1990. 9.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 제4호 결정)과 가족법(1990. 10. 2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 제5호)이 제정되었다.

가족법전은 제1장 가족법의 기본(제1조 - 제7조), 제2장 결혼(제8조 - 제14조), 제3장 가정(제15조 - 제39조), 제4장 후견(제40조 - 제45조), 제5장 상속(제46조 - 제53조), 제6장 제재(제54조) 등 6개장 54개조로 구성되었으며, 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및 기타 가정성원들의 관계를 규정한 제3장이 핵심을 이룬다. 제5장 상속은 별도의 상속법전(2002)의 제정으로 이와 충돌하는 규정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체계는 혼인법(1980)과 상속법(1985)을 별도로 규정하는 중국법과 유사한데, 가족법은 내용상으로도 중국혼인법과 유사하다.¹⁾ 가족법전은 제정 이후 1993년, 2004년, 2007년, 2009년 4차례 수정 보충되었다.²⁾

다음에서 가족법전을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2) 기본원칙

가족법은 제1장에서 가족법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가족정책은 정권수립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가족강화론에 터잡아 왔으며, 이는 가족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1조에서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

1) 중국혼인법은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제2장 혼인(제4조-제8조), 제3장 가정관계(제9조-제23조), 제4장 이혼(제24조-33조), 제5장 부칙(제34조-제37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수정보충된 내용은 2018 최신 북한법령집(장명봉 편, 북한법연구회, 2018, 393면-397면) 참조.

혼, 가족제도를 공고발전 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가족의 강화는 사회주의국가가 안정 되기 시작하는 1930년대 이후부터 유지되어 온 원칙이기도 하다.³⁾ 또한 북한은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가정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⁴⁾

그 밖의 기본원칙으로는 남녀의 완전한 평등, 모성과 아동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⁵⁾ 북한에서 모성과 유아에 대한 특별한 국가적 보호 원칙은 가족법의 기본원리이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헌법 제77조 제2항). 모성과 유아에 대한 특별한 국가적 보호 원칙에 따라 임신기간 및 산후 수유기간 중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혼 이후에도 이혼당사자 일방에게 일정한 기간 부양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들 사이에 부양의무를 인정한다.⁶⁾

2. 결혼

(1) 성립요건

결혼은 남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제8조). ‘남녀 사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성(同性) 사이의 결합은 인정될 수 없다. 결혼연령은 남자 18살, 여자 17살 이상이지만(제9조 제1항), 만혼(晩婚)을 장려하는 규정을 두

고 있다.⁷⁾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이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결혼할 수 없다(제10조). 이러한 금혼범위는 우리 민법과도 유사하며, 다른 입법례에 비하여 넓다. 이는 유교를 이념으로 하는 전통적 가족제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⁸⁾

위의 실질적인 요건에 위반한 결혼은 무효이며, 결혼의 무효인정은 재판소가 한다(제13조).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신병자와 같은 의사무능력자의 결혼, 제3자의 강요나 부추김 등에 의한 결혼,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강박에 의한 결혼, 어떠한 목적을 위한 가장결혼 등은 모두 무효가 될 것이다.⁹⁾ 무효로 인정된 결혼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한다. 그러나 자녀양육문제는 이혼규정(제22조, 제23조)을 적용한다(제14조).

결혼은 신분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가족법 제11조). 결혼등록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 쌍방은 법이 제기한 요구를 갖춘 결혼등록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신분등록기관에 함께 가야 한다. 신분등록기관은 결혼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 결혼의 성립요건 즉, 당사자들의 자원적 합의, 법정 나이, 이중결혼금지, 근친결혼금지를 지켰는가를 심사하여 이를 기초로 결혼을 승인하며 결혼등록대장에 등록한다. 신분등록기관은 결혼등록을 한 다음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시민증, 공민증)의 해당란에 결혼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당사자 중 신분증을 가지지 않게 된 공민인 경우¹⁰⁾에는 신분등록기관의 결혼등록대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신분증에 결혼사항이

3) John N. Hazard, Communists and their law, Univ. of Chicago Press, 1969, p.306

4) 김정금, 가족법,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 16면·23면.

5) 조일호, 조선가족법(대학용), 교육도서출판사, 1958, 29면-33면.

6) 가족법은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7)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제9조 2항).

8) 조일호, 앞의 책, 83면-84면.

9) 김정금, 앞의 책, 29면; 리송녀, “공화국 가족법은 가정을 공고화하고 혁명화하는 무기”, 법학문집 7,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144면.

10) 북한은 공민이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와 인민보안, 안전보위기관에 입대한 경우에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거주하던 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제출하며, 재판서의 판결에 의하여 노동교화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회수하므로(공민등록법 제13조 참조), 공민인 경우에도 신분증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등록되면 결혼 등록을 인정한다. 따라서 결혼 성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문건은 신분등록기관에 있는 결혼등록 대장이다.¹¹⁾¹²⁾ 외국에 사는 국민의 결혼등록은 북한 영사대표기관에 하며 영사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해당기관에 할 수 있다(가족법 제12조). 결혼등록은 결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분등록기관은 부부 쌍방에게 결혼증 1매를 교부한다. 당사자 일방이 인민군대 및 경비대 현역군인인 경우에는 주둔 지역의 신분등록기관에서 결혼등록을 할 수 있고, 이때 신분등록기관은 거주지 인민보안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¹³⁾ 신청서를 수리한 신분등록기관은 당사자 본인과 상대방의 공민증에 따라 성립요건에 맞는지 심의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결혼을 승인하고 결혼등록대장에 등록한다.¹⁴⁾

(2) 결혼의 효과

가족법은 제3장에서 결혼의 효과로서 부부관계의 발생(제16조), 부부는 자기의 성(姓)과 이름을 그대로 가지며, 직업선택과 사회정치생활의 참가에 대한 자유를 가짐(제17조),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부부 평등(제18조), 배우자 부양(제19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명시한 제17조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양의무에 대해서는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노동능력을 잃은 배우자만을 부양할 의무를 진다(제19조).

가족법은 부부재산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시행세칙’ (1946) 제7조는 “결혼

전의 부(夫) 또는 부(婦)의 재산은 각 그 소유에 속한다. 결혼생활 중에 부부가 소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에 속한다”고 하여 부부재산공유제를 명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제정된 가족법은 부부재산제의 내용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면서 대신 민법에서 개인소유권제도에 가정재산제도를 신설하여 부부 사이의 재산소유·관리관계를 부부를 포함하는 가정성원 전체 사이의 재산소유·관리관계의 일부분으로 취급하고 있다. 민법 제61조는 ‘가정성원으로 된 공민은 가정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진다’라고 규정하며, 가족법 제39조는 이혼 등의 사유로 가정성원이 갈라져 나가는 경우 재산분할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가정재산과 개별재산을 기준으로 분할방법을 달리 규정함으로써, 민법상의 개인소유권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북한의 ‘개인소유’는 가정 내에서는 개별재산과 가정재산으로 나눈다. ‘공민이 가정성원으로 있으면서 살림살이에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번 재산’은 가정재산이 되고, ‘가정성원으로 들어올 때에 가지고 왔거나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그 밖의 개인적 성격을 띠는 재산’은 개별재산이 된다. 가정생활과정에서 취득된 재산은 그것이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로 이루어진 것이건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 것이건 관계없이 모두 가정재산에 포함되며 가정성원 전체의 소유로 된다. 예컨대 가정생활기간에 개별적 가정성원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저금한 돈도 가정재산에 속한다.¹⁵⁾ 가정재산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가정의 재산적 토대를 튼튼히 하고 가정성원들이 가정공동의 부(富)를 증대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가정을 재산적으로 공고화하는데 있다.¹⁶⁾ 따라서 종래 부부의 공유재산은 모두 가정재

11) 리송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결혼제도”, 법학연구문집 3(조선사회과학학술집 97 법학편), 사회과학출판사, 2010, 81면-82면.

12) 결혼의 법률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문건은 신분등록기관의 공민등록대장이라는 문헌이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참고자료, 출처미상, 22면). 현행법상의 주민등록대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3) 북한의 가족법, 법원행정처, 1998, 365면.

14) 조일호, 앞의 책, 59면. ; 김정금, 앞의 책, 27면.

15) 민사법사전,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8면-9면.

16) 리송녀, “공화국 가족법은 가정을 공고화하고 혁명화하는 무기”, 173면.

산에 속한다. 하지만 종래와 달리 부부 이외의 다른 가정성원들도 가정재산에 대하여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가정성원들은 가정재산에 대하여 기여정도에 따른 지분을 가지지 아니하며 가정의 유지와 가정성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용도를 결정할 수 있다. 개별재산은 이혼 또는 그밖의 사유로 가정성원이 가정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 가정성원의 개인소유로 되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때에는 가정재산과 같이 모든 가정성원들이 함께 점유, 이용할 수 있다.¹⁷⁾

이와 같은 가정재산제도는 사회주의국가인 다른 입법례에서는 찾아 볼 수 없지만, 중국의 전통 제도인 동거공동재산제(同居共同財産制)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동거공동재산제는 경제를 공동으로 영위하며, 부부, 친자 및 이들의 근친 혈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혈족 단체로서, 생산, 소비 및 자산 보유의 전면적인 공동 계산관계이며 그 바탕을 이루는 家産은 공동회계의 자산 내용을 지칭한다.¹⁸⁾ 사회주의 법체계를 계승하였다는 북한의 제도가 중국의 전통사회의 제도와 유사한 점은 북한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북한은 평등주의에 바탕한 사회주의적 성격 외에 개인의 영웅적인 능력에 바탕한 카리스마 사회, 세습적 봉건적 신분사회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수사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⁹⁾

(3) 이혼

북한은 해방직후 남녀평등의 차원에서 이혼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법적으로 보장하려던 입장에서 가족의

강화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라는 새로운 사회적 요청에 따라 이혼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가 이혼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입장으로 변화하였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이혼사건처리의 원칙은 이혼문제를 혁명의 이익의 견지에서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이혼이 혁명에 이로울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해로울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혼문제가 단순히 사사로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이익, 혁명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으며, 사회주의 사회는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가정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 혁명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혼문제를 혁명의 이익의 견지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부터 개인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와 결부된 이혼과 사소한 환경문제, 정치적 문제와 결부된 이혼을 방지하는 원칙, 이혼사유가 있더라도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이혼을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이 파생된다.²⁰⁾

북한은 재판에 의해서만 이혼할 수 있으며(제20조 1항),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파탄주의를 취하여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흠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이혼할 수 있다(제21조).

부부관계는 이혼하면 없어지며(제20조), 자녀의 양육자는 자녀의 이익의 견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한다(제22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에게 자녀가 노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17) 민사법사전, 앞의 책, 117면.

18) 최승조·한복룡,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妻의 財産상 지위 - 中國 同居共同財産制와의 비료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9권 제3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96면; 니이다 노보루(仁井田陞) 지음 박세민·임대희 옮김, 중국법제사연구(가족법),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총서 제4집, 서경문화사, 2013, 164면 등 참조.

19) 윤대규, “북한법의 성격과 기능”, 북한정권 55년: 북한법제의 변화와 전망 학술대회발표집, 북한법연구회/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위, 2003. 11. 1., 43면.

20) 리송녀, “공화국 가족법은 가정을 공고화하고 혁명화하는 무기”, 159면-163면.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 족법 참고자료, 43면-47면.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양육비는 자녀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 범위 안에서 재판소가 정한다.(제23조). 양육비를 지불하던 당사자가 노동능력을 잃었거나 자녀를 맡아 키우던 당사자가 재혼하여 그 자녀가 계부 또는 계모의 부양을 받을 경우 이해관계자는 양육비를 면제하여 줄 데 대하여 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다(제24조).

이혼하면 부부는 개별재산은 각자가 가지며 가정재산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나누어 가진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해결한다(제39조). 인민정권기관은 리혼 당사자들 사이에 국가소유의 살림집리용권과 관련한 분쟁이 제기될 경우 해당 재판소의 판결서등본에 기초하여 살림집리용권자를 새로 정해주어야 한다(민법 제50조 제2항).

3. 친자관계

(1) 친생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이며,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는 결혼생활과정에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와 같다(제25조). 결혼 중에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한 경우에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가 되며, 미혼중의 여성이 임신하여 해산한 경우에 남자가 그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인정하면 아이의 아버지로 된다. 자녀의 어머니가 그 자녀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남자 쪽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의 절차²¹⁾로 아버지를 확정한다. 아버지의 확정을 위한 민사사건은 법의 감정결론서에 기초한 재판소의 판정에 따른다.²²⁾

(2) 법정친자

가. 계부모자녀관계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계부 또는 계모와 계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계자녀와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의 관계는 없어진다(제29조). 계부모와 계자녀 관계가 인척에 지나지 않는 우리 민법과는 다르다. 이러한 태도는 계부모와 계자녀, 계부모 상호간의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²³⁾ ‘가정의 공고화’를 위한 가족정책의 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나. 양친자

북한은 입양제도에 있어서 일찍부터 완전양자제도를 채택하여 왔다. 입양은 양부모로 될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주민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이루어진다(제32조). 양자는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양자녀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질병이 있는 자, 그 밖에 양자녀를 보육 교양할 능력이 없는 자는 양부모가 될 수 없다(제30조). 또한 양자녀로 될 자의 친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하며, 양자녀로 될 자가 6살 이상인 경우에는 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제31조). 가족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론 상 부부 일방만의 입양은 허용하지 않는다.²⁴⁾

입양이 성립하면,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고,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입양 이전 부모와의 관계는 없어진다(제33조).

입양은 파양에 의하여 해소된다. 파양은 양자녀와 양부

21) 북한은 민사소송 이외의 가사소송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2) 민사법사전, 앞의 책, 727면.

23) 리송녀, “공화국 가족법은 가정을 공고화하고 혁명화하는 무기”, 157면.

24) 김정근, 앞의 책, 66면; 리현숙, “공화국 가족법상 입양제도의 우월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사회과학(역사 법학) 제39권 제8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3. 8, 78면.

모 또는 양부모와 양자녀의 친부모나 후견인이 합의하고 해당 주민행정기관의 승인 밑에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이루어진다. 파양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해결한다(제34조). 파양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입양 당사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제3자,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도 양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파양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²⁵⁾

(3) 친자사이의 법률관계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며 부모를 모르는 자녀의 성은 주민행정기관이 정한다(제26조). 부성주의(父姓主義)는 남녀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북한 가족법의 기본입장에 어긋나는 규정이지만, 가족법은 부계혈통주의(父系血統主義)의 오랜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미성년 자녀의 대리인이 되며, 자녀도 노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제28조). 자녀교양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나(제27조), '친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4. 후견 및 기타 가족성원간의 관계

(1) 후견

후견제도는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와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하여 후견인을 정한다(제40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으로는 조부모, 형제자매가 될

수 있고,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후견인으로는 배우자 또는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 후견인으로 될 수 있는 자가 여럿인 경우 후견의무수행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후견인으로 된다(제41조). 법정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 선정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행정기관이 후견인을 정한다(제42조).

후견인은 후견받는자의 재산을 관리하며 그의 대리인으로 되며(제43조), 후견받는자를 보육교양하며 그의 생활과 건강을 돌보아야 한다(제44조).

후견의무수행정형을 감독하는 사업은 주민행정기관이 한다(제45조). 주민행정기관은 후견인감독규정에 따라 후견인의 일체의 행위를 감독하며, 그 임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한 지시를 할 수 있다.²⁶⁾

(2) 기타 가정성원간의 관계

가정성원은 가족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결혼이나 가장 가까운 혈족에 기초하여 일정한 사회적 생활을 함께 하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의 성원들이다.²⁷⁾ 가족법은 기타 가정성원들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조부모와 손자녀의 부양의무(제35조), 형제자매의 부양의무(제36조), 그 밖의 가정성원들의 부양의무(제37조)를 규정하고 있다.

가정성원들 중에 부양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부양능력이 있는 모든 가정성원들이 공동으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제37조 제1항). 부양능력이 있는 가정성원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가 부양하며, 그들이 없을 경우에는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²⁸⁾ 부담한다(제37조 제2항). 이러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국가

25) 김정금, 앞의 책, 70면.

26) 민사법사전, 같은 책, 698면.

27) 민사법사전, 같은 책, 10면.

28) 가정성원의 개념에 비추어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라도 현실적으로 가정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지 않으면 가정성원이 될 수 없다.

가 부담한다(제38조). 이러한 부양제도는 가정의 공고화와 관련된다. 가정을 재산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가정 재산의 분화를 막고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가정성원 모두에게 공동의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한다.²⁹⁾

III. 상속법

1. 종설

북한 상속제도는 법체계상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권 초기 상속법은 민법의 일부였다. 1958년 ‘민법초안’은 총칙, 소유권법, 저작권법, 창의고안법, 상속법 여섯 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³⁰⁾ 이러한 태도는 가족법(1990)이 제정되면서 바뀌었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법 제5장에 상속을 규정하였다. 이는 사회주의국가의 일반적인 입법태도와 다른 것으로, 가정을 재산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한다.³¹⁾ 이러한 변화는 2002년 상속법전(2002. 3.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82호)을 제정하면서 다시 바뀌어 독립된 법규정을 두게 되었다.

상속법은 제1장 상속법의 기본(제1조~제14조), 제2장 법정상속(제15조~제26조), 제3장 유언상속과 증여(제27조~제40조), 제4장 상속의 집행(제41조~제57조)으로 구성되며 총 4장 57개조이다. 북한 상속법은 그 체계상 중국 상속법과 유사하다.³²⁾

북한 상속법은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 보장(제2조), 상속권의 평등 보장, 유언상속(제3조) 등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을 부양제도와 관련시킨 규정이 많다. 국가는 상속에서 독자적

인 생활능력이 부족한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며(제4조), 부양 여부와 관련하여 상속분을 조정하거나(제19조 단서), 동거부양한 자 등에 대한 상속재산의 지급(제5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서 상속법전을 중심으로 상속제도를 고찰하여 본다.

2. 상속제도 일반

(1)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망에 대한 공증기관의 인증에 의하여 시작된다(제7조). 상속절차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하며,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상속절차장소로 불합리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소재지 또는 사망지에서도 할 수 있다(제8조).

(2) 상속자격

상속의 본질상 협동단체나 국가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공민이 상속인이 된다. 태어나(제17조), 행위무능력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행사는 그의 대리인이 한다(제10조).

피상속인을 생전에 몹시 학대하였거나 의식적으로 돌보지 않은 자, 유언을 위조하였거나 그 근거를 없애 버린 자, 속임수나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였거나 상속조건을 고의적으로 만든 자, 유언에 의하여 상속받지 못하게 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제9조).

29) 리송녀, “공화국 가족법은 가정을 공고화하고 혁명화하는 무기”, 180면.

30) 서창섭, “공화국 민법전 체계에 대하여”, 민주사법 제5호, 1959. 5., 32면.

31) 리송녀, “공화국 가족법은 가정을 공고화하고 혁명화하는 무기”, 176면-178면.

32) 중국 상속법은 제1장 총칙(제1조~제8조), 제2장 법정상속(제9조~제15조), 제3장 유언상속과 유증(제16조~제22조), 제4장 유산의 처리(제23조~제34조), 제5장 부칙(제35조~제37조)으로 구성되며, 총 5장 37개조이다.

(3)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개별재산과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받는다. 다만, 부양료를 받을 권리 같은 피상속인의 인격과 불가분리적으로 연관된 권리는 상속할 수 없다(제11조). 상속할 수 있는 재산으로는 ① 노동에 의한 분배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② 국가 또는 사회의 추가적 혜택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③ 개인부업경영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④ 살림집, 도서, 화폐, 저금,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료전기재 ⑤ 각종 재산상 청구권과 채무 ⑥ 그밖에 다른 공민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같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포함된다(제13조).³³⁾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개인살림집같이 나눌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제12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개별재산’인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소유재산’과 다르다. 상속재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개별재산이며, 가정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³⁴⁾ 가정재산은 한 가정을 이루고 살던 가정성원 집단에 모두 넘어가 가정재산으로 유지되며, 가정성원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상속순위에 의하여 따로 살던 가

족 및 가까운 친척들에게 넘어간다.³⁵⁾

3. 법정상속

사회주의 입법례는 한결같이 유언우선의 원칙을 취하여 법정상속은 유언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북한에서도 법정상속은 ① 유언이 없거나 무효로 된 경우 ② 유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을 자가 그것을 포기한 경우 ③ 유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을 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④ 유언에서 지적하지 않은 재산이 있을 경우 적용된다(제16조).

(1) 상속인과 상속순위

사회주의상속법은 혈족상속인의 순위를 정하는 기본원리로 유별주의(Erbklassensystem)³⁶⁾를 취하며³⁷⁾ 북한도 마찬가지이다.³⁸⁾ 법정상속인의 제1순위는 배우자, 자녀, 양자녀, 계자녀, 출생할 자녀, 부모, 양부모, 계부모, 제2순위는 손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양형제자매, 계형제자매, 제3순위는 4촌 안의 혈족이다(제17조). 사회주의법은

33) 중국 상속법의 상속재산으로는 ① 공민의 수입, ② 공민의 가옥, 저축 및 생활용품, ③ 공민의 임목, 가축, 가금, ④ 공민의 문물과 도서자료, ⑤ 법률이 공민소유를 인정한 생산수단 ⑥ 공민의 저작권과 특허권 중의 재산권 ⑦ 공민의 그밖의 합법적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

34) 민사법사전, 앞의 책, 117면.

35) 리송녀, “공화국 가족법은 가정을 공고화하고 혁명화하는 무기”, 179면 ; 윤종철,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소유권에 관한 이론”, 법학논문집 5,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5, 127면.

36) 법정상속인의 경우 혈족상속인을 어떠한 원리에 기초를 두고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체로 相續類別主義(Erbklassensystem), 親系主義(Parentelsystem), 3系統主義(Dreiliniensystem) 3종류가 있으며, 우리의 전통적인 상속인결정원리는 친계주의를 취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나, 현행 민법은 3系統主義이다. 친계주의와 3계통주의의 주된 차이는 상속순위 중 형제자매와 조부모 중 누구를 선순위상속인으로 할 것인가에서 나타난다. 즉, 친계주의에서는 형제자매가, 3계통주의에서는 조부모가 선순위자가 된다. 우리나라, 스페인, 일본 등이 이를 기초로 하고 있다.

37) 상속유별주의(相續類別主義)는 피상속인과의 혈연의 친소관계(親疎關係)에 의하여 혈족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선순위의 그룹이 후순위 그룹을 상속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제1순위로 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전혈(全血)의 형제자매 및 전혈의 형제자매의 자녀가 2순위이며, 반혈(半血) 형제자매와 그의 자녀는 제3순위이며, 기타의 방계혈족은 촌수의 제한 없이 모두 4순위에 들어간다. 이는 로마법상의 원칙이며 프랑스 민법이 이를 기초로 하고 있다(곽윤직, 相續法, 박영사, 2001, 94면).

38) 신영호, “북한의 제정 상속법의 동향과 평가”, 북한법 연구 제8집, 2009, 73면.

부모를 자녀와 함께 제1순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제3순위의 경우, 근친상속의 원리가 적용되어 4촌보다 3촌이 우선할 것이다.³⁹⁾

재판기관은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부양하였거나 또는 부양받았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을 나누어줄 수 있다(제56조). 이 경우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속인인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자녀는 해당 상속순위를 차지한다(제18조).

(2) 상속분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들의 상속분은 같다(제19조 본문). 다만, 부양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생존기간 그에 대한 부양의무를 직접 이행하였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여 수입이 적은 자의 상속분은 늘일 수 있으며 부양능력이 있으면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의 상속분은 줄일 수 있다(제19조 단서).

(3)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때부터 6개월 안으로 재판기관에 서면이나 말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안으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인정한다(제20조). 상속이 승인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과 재산상 권리의무는 제한 없이 상속된다(제21조 본문).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한정하여 상속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과 재산상 권리의무는 계승할 수 없거나 제한된다(제21조 단서).

한정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언에 의한 증여를 이행할 수 있다(제22조). 또한

한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해당한 채무를 이행하며 증여받게 된자에게 재산을 넘겨주어야 한다(제23조). 한정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채권자가 여럿일 경우 그들의 채권비율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협동단체의 채무에 대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언에 따르는 증여를 이행하지 않는다(제24조).

상속인의 상속포기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발생한다(제25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자의 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간다(제26조).

4. 유언상속과 증여

(1) 유언능력

공민은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유언할 수 있다(제27조 1항). 유언자로는 행위능력이 있는 공민이 된다. 그러나 16살에 이른 직업을 가진 자는 자기 수입으로 마련된 재산의 범위 안에서 유언할 수 있다(제34조).

(2) 유언의 효력

유언한 공민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유언에 따라 상속, 증여된다(제27조 2항).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과 함께 발생하며, 조건을 붙인 유언의 효력은 그것이 성취된 경우에 발생한다(제30조).

여러 차례 한 유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며(제40조 2항), 속임수, 강박에 의하여 한 유언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제35조 2항). 유언의 무효인정은 이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관이 한다(제39조).

유언자는 자기의 유언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제40조 1항).

39) 최달근, 북한민법의 연구, 세창출판사, 1998, 327면.

(3) 유언상속인과 수증자

북한은 우리와는 달리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제28조 제1항), 상속분도 달리 정할 수 있다(제29조). 다만, 유언에 따라 상속받는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유언의 효력은 상실되며(제31조 1항), 유언상속에서는 대위상속을 할 수 없다(제31조 2항).

유언상속인은 주로 상속인의 범위에 들어있는 자로서 유언에 의하여 상속받을 때 채무까지도 상속받는 자를 의미하며, 유언에 의하여 증여받는 자는 상속인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는 법인이거나 공민이 피상속인의 특정한 재산을 증여받는 자로서 유언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⁴⁰⁾ 다만 유산의 전부 또는 그의 일정한 비율을 대상으로 하는 유언증여 즉, 포괄유증의 경우(상속법 제33조)에는 상속인과 같은 법률상의 지위를 가지므로 상속인이 가져야 할 권리는 물론 채무도 이행하여야 한다.⁴¹⁾

유언상속 또는 증여받는 자는 그것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유언상속 또는 증여받게 된다는 것을 안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유언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 포기한 재산의 처리는 법정상속절차에 따른다(제32조).

(4) 유증의 자유와 그 제한

유언자는 법이 정한데 따라 상속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할 수 있다(제36조 본문).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그에 해당하는 권리의무를 넘겨받는다(제28조 2항, 제33조). 다만, 이 경우 부양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는 2분의 1이상, 손자

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는 3분의 1이상 상속할 재산을 남겨놓아야 한다(제36조 단서). 또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유언자가 설사 가정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몫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재산을 유언으로써 처분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⁴²⁾

유언에 따라 증여받는 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유언의 효력은 상실된다(제31조 1항).

(5) 유언의 방식

유언은 명백하고 진실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제35조). 유언의 방식은 ① 서면유언, ② 말로하는 유언, ③ 녹음유언 ④ 공증유언이 있다(제37조).

서면유언은 유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며 작성날자를 쓴다. 입회인은 필요 없다. 말로하는 유언은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입회인을 참가시키고 한다. 이 경우 입회인 1명은 유언내용을 쓴 다음 유언자와 입회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시키고 유언자와 입회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유언날자를 쓴다. 말로 하는 유언을 녹음할 경우에는 2명 이상 입회인의 말과 유언날자도 녹음한다. 공증유언은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입회인을 참가시키고 공증인⁴³⁾ 앞에서 한다. 이 경우 공증인은 유언내용을 기록하여 유언자와 입회인에게 확인시키고 유언자와 입회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며 공증기관의 공인을 받고 유언날자를 기록한다.

① 상속 또는 증여받는자, ② 상속 또는 증여받은자와 친척이 되는자 ③ 행위무능력자 ④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자는 유언의 입회인으로 될 수 없다(제38조).

40) 문철만/김정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제도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논문집 22, 조선사회과학학술집 415 법학편, 사회과학출판사, 2010, 103면-105면.

41) 문철만/김정숙, 앞의 논문, 107면.

42) 리송녀, “공화국 가족법은 가정을 공고화하고 혁명화하는 무기”, 178면.

43) 공증법에 따르면, 공증은 국가공증기관에서 하며(제5조), 신청당사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 국가공증기관이 해당 관할이 된다(제14조). 공증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중앙재판소가 한다(제7조).

5. 상속의 집행

(1) 상속인에게 알림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 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곧 다른 상속인에게 알려야 한다.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대하여 알지 못할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의 주민행정기관이 상속인에게 알린다(제41조).

(2) 상속집행자

공민은 유언으로 상속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으로 상속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인이 집행자로 된다.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에는 그들이 합의하여 상속집행자를 정하고 주민행정기관에 알린다. 상속집행자를 합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주민행정기관이 선정한다. 상속집행자로는 행위능력이 있는자가 된다(제42조).

상속집행자는 상속재산을 바로 관리하며 상속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상속인과 이해관계자는 상속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제43조).

상속집행자제도는 영미상속법에서의 유산관리인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⁴⁴⁾

(3)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인과 이해관계자는 상속의 집행정형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다. 상속의 집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기관에 해당한 청구를 할 수 있다(제44조).

상속집행자는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피상속인의 개별 재산과 그와 동거한 가정성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이나 개별재산을 구분하고 상속인들에게 알려야 한다(제45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접수하고 채무를 이행한 다음에야 나눌 수 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나눈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몫에 따라 채무를 이행한다(제46조). 상속집행자는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채권을 증명할 데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증명하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제47조).

상속집행자는 상속재산을 나눌 경우 출생할자의 상속분을 남겨놓아야 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문건에 근거하여야 한다(제48조). 출생할자의 상속분을 남기지 않고 상속을 집행한 경우 상속인은 그 상속분을 돌려주어야 한다. 출생하여야 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제49조).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제57조).

(4)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을 경우 주민행정기관은 재산관리자를 선정한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재산관리자는 행위능력있는 공민이나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될 수 있다(제50조).

재산관리자는 상속재산을 자기의 재산처럼 관리하여야 하며, 상속재산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제51조). 또한 상속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채권을 행사하거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의 채권자, 유언에 따라 증여받게 된자를 전부 확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넘겨줄 수 없다(제52조).

재산관리자는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이나 증여에 대한 유언을 접수할 수 있다. 채권이나 증여에 대한 유언을 접수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인

44) 신영호, “북한의 제정 상속법의 동향과 평가”, 89면.

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증여할 수 있다(제53조).

재산관리자는 상속재산처리를 끝낸 경우 그 정형을 문건으로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관리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불받을 수 있다(제54조).

상속, 증여받는자가 없거나 또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상속받을 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국고에 납부한다(제55조).

IV. 맺음말

이상에서 북한의 가족법과 상속법을 살펴보았다. 북한 가족법의 가장 큰 특색은 '가정의 공고화'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정재산제도는 다른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이다. 부부를 포함한 가정성원들은 가정재산에 대한 지분이 없으며 가정의 유지와 가정성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이용하고 그 용도를 결정할 수 있다. 가정재산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유언으로 처분할 수 없다. 또한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도 법정친자관계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도 가정의 공고화와 관련되며, 부양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가정을 재산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가정성원 모두에게 공동의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그밖에도 가족법은 일반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남녀의 완전한 평등, 모성과 아동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일부

일처제(一夫一妻制)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유교를 이념으로 하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영향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라는 넓은 금혼범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녀는 아버지의 성(姓)을 따름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상속법은 사회주의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언상속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와는 달리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고, 상속분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밖에도 부모를 자녀와 함께 법정상속인 제1순위로 규정하며, 상속제도는 부양제도와 많은 관련을 가진다. 국가는 상속에서 독자적인 생활능력이 부족한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부양여부와 관련하여 상속분을 조정하거나, 동거부양한 자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지급할 수 있다.

법원이 아닌 주민행정기관이 가족행위에 관여하는 것도 우리와는 다른 특색이다. 입양이나 협의과양의 승인, 다툼이 있는 경우 후견인 선정, 후견업무의 감독, 피상속인의 사망 알림, 다툼이 있는 경우 상속집행자의 선정,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재산관리자의 선정 등을 주민행정기관이 한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특례법이 제정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송달 등 이혼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하여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온 북한이탈주민이 이혼 후 남한에서 재혼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⁵⁾ 또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⁴⁶⁾ 제정하고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 북한주민의 상속·수증재산 등의 관리에 대

45)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①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은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서울가정법원이 제2항에 따른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에게 송달을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른 공시송달(公示送達)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첫 공시송달 후에 하는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46) 2012. 2. 10 법률 제11299호로 제정, 2012. 5. 11. 시행함.

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다. 북한주민은 상속·유증 등의 사유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나 그 재산 관리를 위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특례법 제13조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직접 사용·관리할 수 있다(특례법 제19조 참조).⁴⁷⁾ 그런데 특례법상 상속회복청구

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어 북한주민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우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⁴⁸⁾ 이에 대하여 북한주민의 상속권 보호를 위하여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⁴⁹⁾



47) 특례법에 관한 필자의 견해는 “북한주민의 상속권”- 특별법 제정 논의를 중심으로-(이은정, 가족법연구 제24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 2010, 149면-178면) 참조.

4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나2179판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구태, “2014년 친족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이론과실무학회, 2015, 152면 - 162면 참조).

49) 특례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최성경, “남북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 가족법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12, 199면 - 201면), 해석론으로 민법 제166조 및 민법 제999조 제2항 전단을 유추적용하여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은 ‘북한주민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민법 제999조 제2항 후단 소정의 ‘상속권 침해시부터 10년’의 규정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정구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아주법학 제8권 제1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40면 - 245면), 북한주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에는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상속권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보는 견해(김영기, “남한 내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실무상 쟁점”, 사법 제31호, 사법발전재단, 2015, 199면-200면), 전경근, “북한주민의 상속에 관한 제문제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므3015판결을 중심으로-, 아주 법학 제8권 제4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29면) 등이 있다.

가정 폭력 상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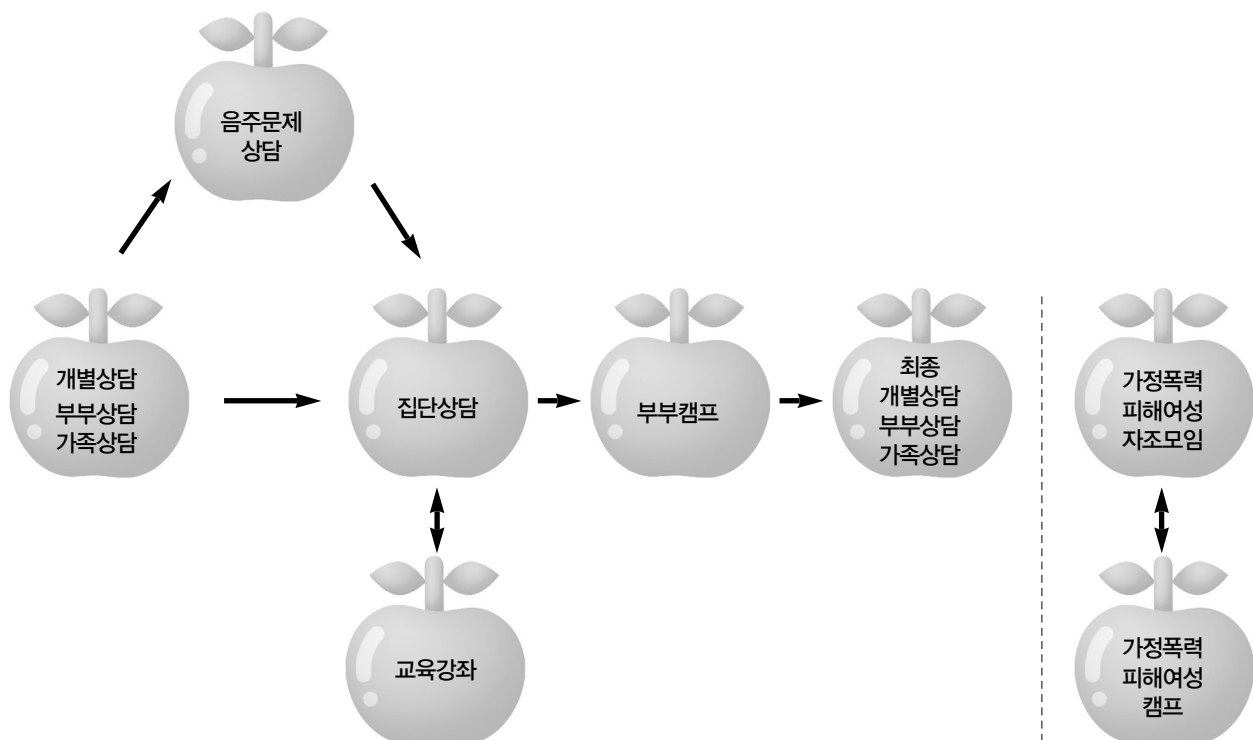
2019년도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가정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피해자와 행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욕구와 동기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

본소는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구조, 지원과 함께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폭력피해자와 행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자의 욕구와 동기에 맞추어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 진행될 본소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I.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폭력에 대한 책임 및 인식 개선, 가정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접근과 더불어 가족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부부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폭력재발방지 및 갈등해결 방안 모색

- ▶ 일 시 : 연중
- ▶ 대 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행위자
- ▶ 진 행 : 본소 상담위원

II. 음주문제 집단상담

가정폭력 행위자의 음주문제를 진단하고 절주나 단주 등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 ▶ 일 시 : 연 4회(각 4회기, 매회기 2시간)

날짜	1회 : 2/8, 2/22, 3/8, 3/22 (4회기) 2회 : 4/5, 4/19, 5/3, 5/17 (4회기) 3회 : 5/31, 6/14, 6/28, 7/12 (4회기) 4회 : 10/18, 11/1, 11/15, 11/29 (4회기)
회기별 주제	1회기 : 알코올 중독 선별검사, 알코올의 이해(역사, 특징 등) 2회기 : 알코올과 내(공격성, 분노, 치매 등) 3회기 : 알코올과 가족(공동의존, 성인아이 등) 4회기 : 알코올과 회복(재활의 실제, 관련 정보 등)
시간	음주문제 피해자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음주문제 행위자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 ▶ 대 상 : 음주문제가 폭력 및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
- ▶ 진 행 : 김혜선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혜선 교수

III. 집단상담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인식, 집단성원들과의 토론 및 상호 피드백을 통해 가정폭력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 모색 · 공유

집단상담 ①

-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 ▶ 대 상 : 가정폭력 행위자
- ▶ 진 행 : 이서원 소장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이서원 소장

집단상담 ②

-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 ▶ 대 상 : 가정폭력 행위자 및 배우자 (부부)
- ▶ 진 행 : 정윤경 전문연구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희진 교수
(명지대학교 방목기초 교육대학)



정윤경 전문연구원



김희진 교수

집단상담 ③

- ▶ 일 시 : 필요시
- ▶ 대 상 : 가정폭력의 문제가 있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부부 외 가족구성원

IV. 감성학교 - 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하기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하기 위하여
점점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 일 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진 행 : 우애령

(사회복지학 박사, 작가)

이서원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정윤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전문연구원)

김희진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우애령 박사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 정	강의제목	강사
2월 14일	분노 : 뜻대로 안 되는 세상 뜻대로 살고 싶은 내가 있다	이서원
3월 14일	친밀감 : 또 다른 나를 만날 때 생기는 기쁨을 찾고 싶다	
4월 11일	불안 : 편안하고 기쁘게 살고 싶어 매일 만나는 내 속 경보기가 있다	
5월 9일	휴가분 : 일상의 무거운 짐 아래 크게 숨쉬고 싶은 목소리가 들린다	
6월 13일	우울 : 우울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우애령
7월 11일	평온 : 내 힘으로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기	
10월 10일	희망감 : 단단히 마음먹고 산을 오르게 하는 힘	김희진
11월 14일	고립감 : 혼자 또 같이 충만한 삶	정윤경
12월 12일	소속감 : 연결의 기쁨	

V. '나, 너, 그리고 우리' 행복찾기 부부캠프

부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부부화합을 도모하는
1박2일 숙박프로그램

▶ 일 시 : 연 2회 (2019년 3월 23일 ~ 24일 /
11월 2일 ~ 3일)

▶ 대 상 : 사전에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에 참석한
부부

▶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운영

VI. 라오니 모임(가정폭력 피해여성 자조모임)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서로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도록 도움을 주는 자조모임

▶ 일 시 :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13시 30분

▶ 대 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 진 행 :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희숙 교수

VII. 라오니 캠프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일일 캠프)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일일 캠프

▶ 일 시 : 연 1회 (2019년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 대 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 상담소 소송구조 주요사건 정리 ●

아동의 복리를 위해 위탁부모가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인은 2015. 10. 2. 생으로, 태어나자마자 서울 관악구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었다. 친부모는 자신을 찾지도 말고 좋은 부모 만나서 잘 살라는 편지 몇 장을 남겼을 뿐, 청구인의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고, 청구인은 같은 달 시설에 입소하였다.

김은진(가명)은 2014. 10. 경부터 시설에서 아기 돌보기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2015. 12. 유아세례를 받으면서 김은진의 배우자인 최민기(가명)가 대부가 되어 주었고, 이러한 인연으로 청구인은 김은진과 최민기의 집으로 가정체험을 오게 되었다. 청구인은 시설에서 보다 가정에서 더욱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였고, 김은진 부부는 청구인을 가정에서 양육할 방법을 찾다가 2017. 11. 16.부터 가정위탁을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생후 20일경 신체에 약간의 상처를 입었는데 이 상처가 덧나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갈 일이 많았다. 그런데 병원에 갈 때마다 후견인인 시설장의 위임장, 후견인 지정 통보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하였다. 청구인은 의료수급자여서 1차 병원과 2차 병원을 거쳐야만 3차 병원을 갈 수 있는데 1, 2차 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을 때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밟아야 했다.

청구인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는 청구인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수술을 받도록 권고하였고, 청구인을 키우고 있는 위탁모 김은진은 후견인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청구인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어 청구인을 양육하고자 법률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9. 1. 3. 위탁아동의 후견인으로 위탁모를 선임한다는 심판을 하였다. 위탁모가 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됨에 따라 아동의 법률상 대리인으로서 더욱더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아동을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

김민선 변호사

- 위 사건은 위탁부모가 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본소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조하여 진행하고 있는 법률구조 지원사업 중 하나이다



결혼과 인생 (192)



몬스터 콜

감독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출연 루이스 맥더겔, 시고니 위버, 펠리시티 존스, 리암 니슨



아이라기엔 나이가 들었고, 어른이라기엔 너무 어린 소년 코너(루이스 맥더겔)의 삶은 어둡다. 유일한 친구이자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펠리시티 존스)는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학교에서는 그보다 덩치가 큰 친구들이 틈만 나면 놀리고 괴롭힌다. 엄마와 이혼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새 가정을 꾸린 아빠도, 엄격하고 지나치게 깔끔한 성격의 외할머니(시고니 위버)도 낯설게만 느껴진다. 어느 날 밤 코너의 창가로 깜짝 놀랄 만한 존재가 찾아온다. 창문 너머 묘지에 우뚝 서 있던 오래된 주목나무가 몬스터로 변신하여 코너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상실감, 버림받았다는 기분,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다는 고립감. 10대 초반에 접어든 소년이 이런 감정을 한꺼번에 경험할 때, 그에게는 비밀이 아주 많아진다. 마음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실망과 분노와 배신감을 표출 시키기에는 아픈 엄마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보고 집안 구석구석을 착실히 쓸고 닦으며 착한 아들로서의 역할에서 감히 벗어날 상상을 하지 못한다. 그에게는 누군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지속될 수 없는 관계가 존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선악 극단의 중간쯤에 위치하며, 자신의 믿음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아집이 그 선의와는 별개로 주변 사람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삶의 어두운 측면에 대해 설명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코너는 자신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몰랐지만, 그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누군가를 갈구하던 그 마음이 몬스터를 불러냈다.

몬스터가 들려주는 세 가지 이야기는 짙막한 애니메이션으로 처리되며 등장인물의 상태에 따라, 혹은 코너의 기분 따라 그 형상과 색깔이 자유자재로 바뀌며 이야기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코너는 처음엔 자신이 이런 동화를 읽을 나이는 지났다는 식으로 관심 없다며 코웃음을 치지만, 몬스터는 '이야기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이야기를 일단 풀어놓으면 그것이 어떤 힘을 발휘할지, 어떤 식으로 질주하게 될지 그 누구도 모른다. 우리 모두에게



는 각자의 이야기가, 각자의 고난과 고통이 존재한다. 그러나 관계에서 단절된 채, 상대방을 미워해서든 혹은 아끼는 마음에서든 그에게 나의 아픔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한 채 혼자 견뎌내려고 한다면 그 날짐승 같은 ‘이야기’는 나의 내면에서 미쳐 날뛰며 스스로를 파괴할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내 안의 괴물 같은 고통을 직면하고 난 다음 그것과 타협하든 혹은 결국 외부로 표출하든 선택해야 한다.

그리하여 몬스터가 들려주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코너는 네 번째 이야기로 그 자신의 어둠을 끄집어내야만 했다. 삶의 고통과 비애를 너무 일찍 깨달아버린, 그 어둠과 제대로 맞서기에는 아직 많이 어렸던 소년이 그 자신의 ‘이야기’를 언어화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별할 수 있게 되고 제대로 애도할 수 있게 되며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된다. 주인공이 어린 소년이

라는 점, 그리고 판타지 장치가 주요 사건으로 등장한다는 점 때문에 <몬스터 콜>이 ‘아동영화’라고 속단하면 안 된다. 우리 모두 예전에, 혹은 지금도 이런 상실감과 분노를 경험했다. “부수고 싶다면 부숴버려. 대신 내가 네 옆에 있을게”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그때의 우리에게도 있었다면, 우리의 그 많은 실패와 고립의 시간들은 좀 더 따뜻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참고로 <몬스터 콜>의 동명 원작은 한국에도 출간되어 있다. 세계 최초로 영국 도서관 협회가 선정한 카네기상과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그림책에 수여되는 케이트 그리너웨이 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임상실습 소감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부터 본 상담소에서 지난 1월 7일부터 4주간 임상실습을 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실무수습 소감을 나누어 싣는다.

경 윤 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결국 2주가 지나도록 ‘수화기 빨리 집어 들기’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장 큰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수화기가 몇 그래미나 한다고 그것이 그렇게 들기 어려운지, 법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람 중에 가슴 아픈 사연 없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만은, 유독 가족과 법이 만나는 사건은 그것을 듣는 이의 속마음도 타들어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장 사랑받아야 할 관계로부터’ 얻은 상처라는 점이 그렇게 느끼게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현실이라는 험난한 지경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확실한 보금자리이자, 최후의 피난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공간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스러질 테니까요. 그래서 사회는 가정에 온갖 긍정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설명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신뢰로 점철된 상호 헌신관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가정들은 그러한 설명에 대체로 부합하는 터라, 평소에는 그에 큰 의문을 품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그런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그것과 대비되는 가정폭력의 잔혹함에 충격을 받곤 했습니다. 정확히는 충격 ‘만’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일종의 이데올로기라는 의심은 예외가 원

칙을 뒤엎을 정도로 많이 보일 때 다시금 들게 됩니다. 쏟아지듯 걸려오는 전화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습니다. 배우자의 폭력, 외도, 자녀에 대한 학대, 경제적 갈등 등. 평소에 대면하기보다 회피하여온 이들의 고통에, 선뜻 수화기를 집어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수화기를 집어 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 무게를 일시적이나마 같이 짊어져 주겠다는 결심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집어 들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상황들을 ‘예외’적인 현상이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기 보다 일단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피하지 않고 들여다보아야만 그 현실을 보다 낮게 할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행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행위를 둘러싼 복합적인 측면들, 가령 경제적인 상황이나 감정적 관계, 각 개인이 살아온 인생이라는 맥락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제야 단순히 충격을 먹거나 슬퍼하기보다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결심의 정도가 부족했는지, 울리는 전화기로 손이 향하면서도 머뭇거리게 됩니다. 언젠가는 저도 선생님들처럼 어려운 이들의 손을 확 잡아줄 수 있게 되리라고 희망을 품어봅니다.

매일매일 수화기를 집어 올리시는 이곳의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과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민 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실무수습을 시작하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꽤 오래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익숙했다. 사실 새로운 보다는 익숙함 속에서 가족법을 다시 공부하고, 공부로 지친 스스로를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길 희망했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봉사를 통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법전원에 진학하게 되면 꼭 실무수습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오고 싶다고 생각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1년간 다니면서 가족법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실무수습생으로 그 동안 하지 못했던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2. 상담 참관

2주간 다양한 상담을 참관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성년후견, 미성년후견, 상속 등 다양한 상담을 참관했다. 같은 쟁점이어도 사실상 모두 다른 개개인의 이야기였다. 쟁점이 같아도 결국 사실관계는 모두 다르다는 것이 아마 법조인이 필요한 이유일 것이고 법학이 어려운 이유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법학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사실도 느꼈다. 예를 들면 부부갈등이 있으면, 부부갈등을 이혼과 같은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면 법으로 부부갈등을 해소 할 수 없다. 결국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와 이해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법률은 그것이 불가능 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이었다. 더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학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고, 처음에 왜 내가 법학전문대학원을 희망했는지를 떠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봉사를 했던 당시에는 지금처럼 매일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사례를 접하지 못했다. 또한 법원 상

담 참관을 통해서 더 다양한 사례를 접하였다.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조금 더 법적인 쟁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과거에는 이해 할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더 흥미롭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법조인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처음에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서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어 했는지를 떠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3. 서류 검토 및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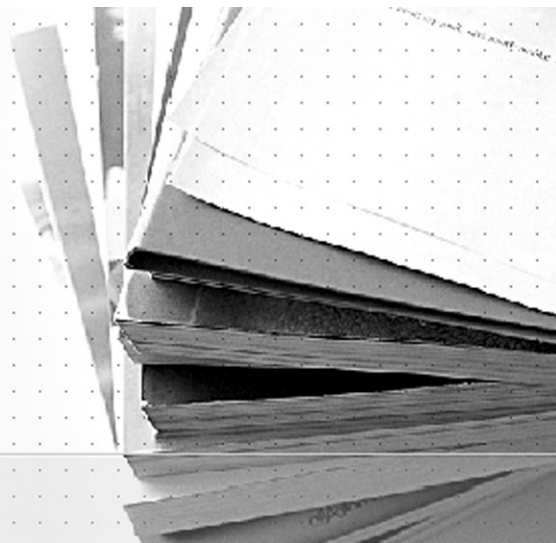
실무수습기간 동안 소장, 참관한 상담에 대한 보고서 등을 썼고, 법률구조 서류 등을 검토했다. 소장을 많이 써보지 않아 처음에는 쓰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웠으나, 쓰다 보니 익숙해졌고 첫 소장 쓰기 과제를 받은 때 보다는 더 자신감이 생겼다. 2주간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장을 쓰고 서류들을 검토하면서 용어와 절차에 대해서 익숙해 졌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담참관 보고서를 작성하며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같이 실무수습을 하는 다른 법전원생들과 논의하고 공부하며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내가 한 분야가 아니더라도 서로가 선택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내가 가지는 관심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공부하고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4. 실무수습을 마치며

앞서 서술한 내용 외에도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상담 참관, 북한 가족법 특강 청강 등의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 가족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나라와 북한 가족법의 비교는 흥미로웠고, 그동안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된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2주는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초석이 될 것 같다.

좋은 책



안녕 주정뱅이

권여선 소설집

창비, 2017



학생 때의 일이다. 학교 앞에 루이제 린저의 소설 제목에서 따온 것이 분명한 ‘생의 한 가운데’라는 카페가 있었다. 그녀, 니나 붓슈만…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괜히 그 이름을 중얼거리곤 했다. 어느 날 그 앞을 함께 지나던 친구가 가만히 말했다. “생의 한가운데라니, 정말 끔찍하지 않니?”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기껏 대학 4학년, 본격적으로 인생의 싹을 채 보기도 전이었는 데 그 때도 삶은 버거웠고 그 또한 일말의 진실이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래서였을까, 그 날이었을 것 같다. 그 옆 ‘아담’이라는 수상한 주점에서 지금이라면 절대 먹지 않을 ‘이브 와인’이라는 수상한 술을 잔뜩 먹고 ‘드디어 술이 나를 먹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옆으로 누웠던 기억이 난다.

술 마시는 이들과 술 마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권여선의 소설집 『안녕 주정뱅이』를 읽으면서 그 때가 자꾸 생각났다. 무엇보다 “산다는 게 참 끔찍하다. 그렇지 않니?”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소설집의 첫 작품 〈봄밤〉 때문인 듯했다.

계절 중에 봄을 싫어한다. 특히 초봄이 싫다. 추운데 두꺼운 옷은 무겁고, 먼지바람이 날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교실의 썰렁함을 생각하면 아직도 싫다. 봄과 여름은 싫지만 여름이 가까워오는 늦은 봄의 밤은 좋아한다. 라일락이 피는 아주 짧은 기간이다. 이문동 우리 집 마당에 있던 라일락이 피고, 가로등이 켜지는 골목에 접어들 때면 라일락 향기

가 퍼졌다. 봄밤이란 이런 것이었다. 이런 봄밤의 계절은 지극히 짧고 지금은 라일락 피는 골목도 별로 없어서 내가 좋아하는 봄밤을 만나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데, 소설 〈봄밤〉은 이런 향취어린 이야기가 아니었다. 〈봄밤〉의 영경은 이혼하고 아이를 빼앗기면서 모든 일에서 손을 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삼인행〉의 그들도 술을 마시고 〈역광〉에는 식후 커피 잔에 소주를 마시는 신에 소설가 ‘그녀’가 등장한다. 어쩌면 이들은 『어린 왕자』의 술주정뱅이처럼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잊으려 술을 마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술을 마시는 것인지조차 잊은 것처럼 보인다. 삶은 불가해하고 누군가 말했듯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비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여선의 작품에서 내가 받는 감동은 이들의 비극적인 서사가 비참하지 않다는 점이다. 소소하지만 기품 있고 장엄한 비극이다. 〈이모〉에 등장하는 이모의 삶은 특히 그러했다. 문학이나 소설이 주는 위안이란 삶의 불가해함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때로는 카타르시스인 것이다.

작가 권여선은 1996년 장편소설 〈푸르른 틈새〉로 상상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 소설집으로 『처녀치마』 『분홍 리본의 시절』이 있으며 오영수 문학상을 수상했고, 장편소설 〈토우의 집〉으로 제18회 동리문학상을 수상했다.

이 숙 현 편집부장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2019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지부 신년 워크숍

지난 1월 18일 본소 강당에서 2019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지부 신년 워크숍이 있었다. 전국지부 임직원들과 본부 광배희 소장 및 상담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된 이 날 모임은 1부 특강과 만찬, 2부 지부지원 사업안내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광배희 소장의 신년사에 이어 ‘북한 가족법의 이해’를 제목으로 이은정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를 있었고, 이어 신년인사 및 점심식사 후 2부에서는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의 사회로 지부운영 및 소송구조 사업 안내(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복미영 상담위원), 가정폭력관련 사업 안내(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교육, 통계프로그램교육, 성희롱예방교육(김진영 상담위원) 등이 있었고 주제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다.

당일 지부 참석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지부소장·이사장 외 직함 및 존칭생략, 지부 가나다순임).

강릉지부 김다희, 최보라 / 구리·남양주지부 정민영 소장, 백현주, 김성문 / 군산지부 조미영 소장, 신옥자, 강필자 / 대구지부 류연희 소장, 이선주 / 대전지부 조성남 / 동해지부 김혜동 소장, 고명희, 김서정 / 목포지부 조혜리 / 부천시지부 박미애, 황영숙 / 성남지부 유향순, 정진경, 박선화, 이춘화 / 송도지부 이영미 소장, 이유주, 한옥숙, 유명운, 이은미 / 수원지부 한진희, 홍휘서 / 순천시지부 유숙영 소장 / 안동지부 서영희 소장, 권오자 / 울산지부 윤영해 / 익산시지부 김성란, 김소연 / 인천지부 권오용 소장, 한현애, 박지훈 / 전주지부 김영수, 광영신 / 정읍지부 송경숙 소장,

송미경, 김덕임 / 중구지부 제오복 소장, 양영재 / 진주시지부 박말순, 박주연 / 제천시지부 이경미 / 창원·마산시지부 서정희 소장 / 청주시지부 홍종호 소장, 이자영 / 춘천시지부 안은실, 이명숙 / 평택·안성지부 석현숙 소장, 김미라 / 포항지부 박해자 소장, 박주연, 김경이 (관련사진 2면)

본소,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 재지정

본소는 2019년 1월 1일자로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재지정되었다. 법문화진흥센터는 법교육 서비스 제공, 청소년 및 일반 국민대상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법교육 관련 인력(전문가·자원봉사자) 양성, 학교 교원 등에 대한 법교육 연수, 법교육 관련 사업을 담당한다. 본소는 2010년 처음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이후 3년마다 재지정되어 왔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실시

2019년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동계방학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이 진행되고 있다. 본소의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은 법률구조사업을 이해하고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실무지식을 함양하는 학습의 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가족문제와 공익,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실습에는 모두 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2기로 나누어 각 2주간씩 진행된다. 실무수습 기간과 실습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실무수습 기간 및 실습생 명단

- 1기(4명) 2019년 1월 7일 ~ 1월 18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경운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이민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서수경 / 이보혜

●2기(2명) 2019년 1월 21일 ~ 2월 1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김은지 / 이승민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에서는 1월 24일 정신과전문의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의 강의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의에는 총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상담 초기에 조정되기 쉬운 갈등의 예’에 관한 강의를 듣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가 실제 가족, 친구 간의 갈등의 예를 설명해주어 참가자들은 이해가 쉬웠다고 평가하였다. 다음 강의는 2019년 2월 28일(목)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관계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소 교육부, 전국 교사 대상 교원직무연수

본소 교육부에서는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15시간의 「법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직무연수에서는 총 14차에 걸친 가족법 개정사와 법률구조, 혼인, 이혼, 친자·양자, 부양, 성년후견, 상속 등의 가족법과 새롭게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별법 및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폭력예방교육, 채권채무, 임대차관련 법률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고, 수강생들은 강의를 들은 후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고 배운 내용을 간단히 실습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수강생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 과정을 모두 마쳤다. 수강생들은 중

요한 법률이슈와 동향에 대해 알게 되어서 유익하였다고 평가하였고, 강사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주셔서 어려운 법도 이해하기 쉬웠으며 학교에서 실제로 활용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관련사진 2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임상실습

2019년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6주간 사회복지 임상실습이 본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소의 사회복지 임상실습은 법학과 사회복지학의 접목을 통하여 가정문제에 대한 법률적 시각을 정립하고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 실천기술과의 접목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론으로는 개별상담 및 가정문제 예방 프로그램의 참관과 개입을 통하여 본소의 법률구조사업을 이해하고 임상사회사업가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실습학생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석사 2학기 송인영이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별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1. 22. 강서지역자활센터 - 가족법 및 신용회복 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본소 실습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석사과정 임상실습

1.7. - 2.15. 송인영

- 동국대 현장실습 연수

1.7. - 2.22.

권은후, 김상협, 김수진, 김예찬, 김장원, 박수아,

박정현, 변영선, 안은성, 이다슬, 이지은, 이혜인,
정유경, 정재준, 조시훈, 조예나, 조현호

●이대 현장실습 연수

1.2 - 2.28 김서정, 조은비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박소연, 정다혜, 천다라, 유혜정,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백국현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23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조정을 하였다. 오후 2시부터는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미혼모 지원네트와 금태섭·김종민·백혜련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아동인권으로 바라 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토론발표를 하였다. 28일에는 양육

비이행관리원과 정춘숙·송희경·표창원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강화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김춘봉 이사, 운영후원금 기부

본소 김춘봉 이사(백인변호사단 대표 변호사)가 설을 맞이하여 운영후원금으로 일백만원을 기부하였다.

곽배희 소장, 교원직무연수 강의 등

본소 곽배희 소장은 1월 18일 본소에서 진행한 교원직무연수에서 법률구조의 역사 및 가족법 개정운동사에 대해 강의했다. 22일에는 본소를 방문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수영 교수와 사회복지대학원생들의 본소 실습과 관련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과 차연실 상담위원이 배석하였다.

2019년 1월 본부 상담통계

총상담 6,680			
법률상담 (6,104)			
면접	전화	인터넷	지상
1,078	4,804	221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453	98	25	

*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 91,88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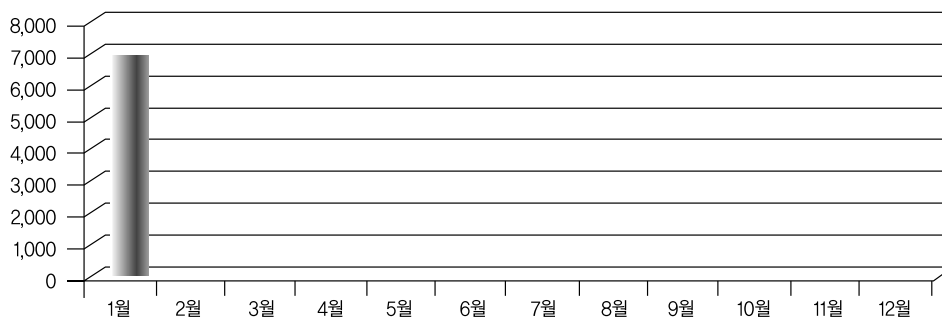
2019년 1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6,680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6,104건(91.4%), 화해조정 453건(6.8%), 소장 등 서류작성 98건(1.4%), 소송구조 25건(0.4%)이었다.

법률상담 6,104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8년 12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관계(0.8%→1.2%), 부부갈등(2.6%→2.7%), 이혼(20.3%→22.7%), 사실혼해소(0.8%→1.4%), 위자료·재산분할(9.3%→10.9%), 친권·양육권(5.6%→6.1%), 친생부인(0.8%→1.0%), 입양(1.7%→2.1%), 파혼(0.3%→0.4%), 이혼무

효·취소(0.2%→0.5%), 개명(0.5%→0.9%), 성변경(1.2%→1.4%), 파양(0.2%→0.3%), 미성년후견(0.3%→0.4%)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채무(0.6%→0.7%),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타(0.4%→0.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6,104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78건(17.7%), 전화상담 4,804건(78.7%), 인터넷상담 221건(3.6%), 지상 1건(0.0%)이었다.



2019년
월별
총 건수

● ● ● 고 맵 습 니 다

2019년 1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유문숙, 홍진범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소영, 강중협, 김지후, 박소영, 박수열, 박은정,
안서연, 윤원섭, 이해민, 이효재, 조진형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연두, 김윤미, 심미숙, 이승주, 전성배,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강경운, 김소희, 김준성, 김하영, 남서연, 박소연,
이민주, 이원정, 정윤정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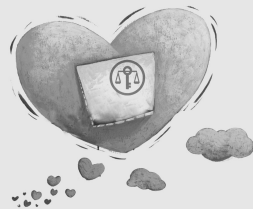
후 원

• 평생회원이 되신 분

이영임, 임완수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지부 소식과 상담통계

강릉지부

1월 15일, 2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구리 · 남양주지부

1월 8일, 15일, 22일, 2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가사조
정을 실시하였다. 17일 경기북부지방법경찰청에서 가정폭력
대응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실시하였다. 장
경아, 정수경, 황은하, 여지은, 김효경, 이정숙 변호사가 법
률상담봉사를 하였다.

군산지부

1월 3일, 3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부모양육안내
교육을 실시하였다. 17일, 24일, 31일 군산지원에서 가사
조정을 실시하였다.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에서 이혼관련 40건의 출장상담과 14건의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
제 지원 사업으로 주말부모교육 등(총 4회, 32쌍 부부)을
실시하였다. 권중환, 장준범, 엄요한, 이승익, 이용원, 박기
대, 이태현, 이서준, 윤용원, 박재한 변호사가 법률상담봉
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2019년 소송구조 사업을 위한 자원변호사단 위촉(총 26
명)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 사업으로 이혼
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6회, 광주지법원

2회를 실시하였다. 성남지원에서 협의이혼 의무상담 6회를 실시하였다. 성남시정보문화센터, 성남중앙도서관 등에 홍보물을 8회 배포 하였다. 강은혜, 공영서, 김민주, 김승구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송도지부

1월 4일 자원상담가 교육 수료식을 실시하였다. 최민석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1월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허정택, 강은혜, 박지훈, 서정식, 김진영, 구민혜, 김현명, 김정혜, 정원진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전주지부

1월 4일, 8일, 1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 상담을 실시하였다. 10일 신년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22일 전주지역자활센터 사례회의 참석하여 법률구조사업을 홍보 하였다. 최대일, 최혜옥, 진휘원, 김경선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1월 21일 2019년 총회 및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복미영 상담위원

2018년 12월 지부 상담통계

구 분 지 부	총 건수	법률상담	법률구조		
			화해 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강릉 (033) 652-9555	83	83			
구리·남양주 (031) 551-9976	351	38	313		
군산 (063) 442-1560	151	113	38		
대구 (053) 745-4501	742	578	163	1	
대전 (042) 520-5258	193	193			
동해 (033) 535-0188	95	95			
목포 (061) 273-2514	131	131			
부천 (032) 667-2314	243	175	67	1	
성남 (031) 707-6661	315	263	50	2	
송도 (032) 834-1369	188	81	107		
수원 (031) 243-4600	222	177	45		
순천 (061) 753-9910	181	174	7		
인동 (054) 856-4200	65	60	4	1	
울산 (052) 246-9568	117	115	2		

구 분 지 부	총 건수	법률상담	법률구조		
			화해 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익산 (063) 851-5113	235	235			
인천 (032) 865-1120	244	155	83	6	
전주 (063) 244-2930	123	122			1
정읍 (063) 535-3705	239	239			
제천 (043) 644-5690	165	165			
충구 (02) 2238-6554	259	259			
진주 (055) 746-7975	102	80	22		
창원·마산 (055) 261-0280	316	248	68		
청주 (043) 257-0088	123	99	21	3	
춘천 (033) 257-4688	96	96			
태백 (33) 554-4004	85	85			
평택·안성 (031) 611-4251	215	197	10	8	
포항 (054) 283-7555	56	56			
지부총상담	5,335	4,312	1,000	22	1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친부모로부터 유기된 아이를 13년간 양육해온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법률구조 2018-211

담당 : 조은희 변호사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내용 : 사건본인(남, 14세)은 출생 직후 부모로부터 유기되어 아동복지센터에 입소하였다. 사건본인은 출생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아동복지센터에 입소하였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야 했다. 사건본인은 부와 모를 알 수 없기에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또한 부와 모가 존재하지 않고, 당연히 친권자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졌다. 청구인(여, 61세)은 이러한 사건본인을 아동복지센터에 봉사활동을 다니던 큰 딸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사건본인이 생후 8개월이던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위탁모로 지정을 받기도 하였다. 현재 청구인과 사건본인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본인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같은 이유로 청구인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하는 데에도 여권발급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위탁모인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향후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인용(대구가정법원 2018. 10. 24.)

1.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2. 미성년후견인은 2019. 1. 13.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 2018. 11. 13.상속재산 포함)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2019. 11. 1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년 11. 30.에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 매년 11. 13.)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2018. 11. 30.까지 대구가정법원에서 실시하는 친족후견인 교육을 받고 교육참가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상속의 포기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육자 몰래 친권자를 변경한 부에 대한 친권자 변경 및 미지급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18-245, 246

담당 : 유수은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변경,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24세)과 피신청인(남, 26세)은 2010년 6월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8세)을 두었으나, 2012년 6월 협의이혼하였다.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혼 후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해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이 피신청인의 얼굴과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사건본인을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신청인은 월 170만 원의 소득으로 사건본인을 홀로 힘겹게 양육하여 왔다. 신청인은 양육비부담조서에 작성된 만큼의 양육비라도 제대로 지급받고자, 이행명령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다. 그러던 중 피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신청인에서 피신청인으로 변경하는 심판결정을 5년 전 받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2년 협의이혼 이후 계속하여 신청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는데,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 법원에 소송 기록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였지만, 3년이 지나 폐기되었다는 대답뿐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다시 신청인으로 변경하고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 친권자 변경 화해권고결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8. 9. 10.)

1.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이행명령 결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8. 11. 14.)

1. 피신청인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2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2. 6. 11.자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2012. 7.부터 2013. 4.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10,000,000원을 분할하여 이 명령이 고지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0개월 동안 매월 10일에 1,000,000원씩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자녀로 인해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8-288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8세)은 1977년경 지금의 배우자를 만

나 혼인 후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렸으며, 가계 형편이 넉넉지 않아 식당일 등 소득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신청인은 노령과 간경화증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이후 배우자와 노년생활을 보내던 중, 셋째 자녀가 통장이 압류당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생활비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나중에 자신이 직접 값을 테니 뒷일은 걱정하지 말라는 자녀의 말에 신청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몇 차례 대출을 받아주었다. 뿐만 아니라 자녀는 신청인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는데, 고령인 신청인은 휴대폰을 다룰 줄 몰라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최근 채무내역을 확인하면서 알게 된 바 자녀가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를 결제하여 신청인 앞으로 과도한 채무가 청구되어 있었다. 이렇게 발생한 채무들을 자녀는 전혀 책임지지 않았고, 심지어 제3자에게 사기로 고소를 당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후 극심한 독촉을 받게 된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비를 쪼개가면서 조금씩 변제하였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비 및 배우자의 연금소득 합 월 평균 70만 원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2인 가족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신청인은 2,4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 11. 3.)

채무자를 면책한다.

오랜 세월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하고 위협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판결

법률구조 2017-133

담당 : 김미옥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1세)와 피고(남, 57세)는 1997년경 혼인 신고 한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는 어린 나이에 자상하게 대해주는 피고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으나 결혼 후 피고는 태도가 돌변하여 건디기 어려운 심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피고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원고는 잠시 별거도 하였으

나 자녀들 걱정에도 다시 재결합하였고 이후 피고의 행동은 더욱 심해졌다.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골절상을 입히거나 음주상태에서 흥기로 위협하고 원고의 직장에도 와서 행패를 부렸다. 현재 피고는 알코올 중독 센터에 입원한 상태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원고는 그동안 아이들을 생각하며 참고 지냈지만 자녀들이 오히려 원고에게 자유롭게 살라며 용기를 북돋아주어 마침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8.10.1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재산분할로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36,281,419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가정폭력과 게임중독으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법률구조 2017-386

담당 : 성정모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3세)와 피고(남, 36세)는 2016년 1월경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던 중에도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였지만 원고는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에 혼인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의 폭행은 더욱 심해졌고 원고는 골절이나 상처를 입는 일이 많아졌다. 게다가 피고는 사행성 게임에 빠져 PC방에서 지내며 카드대출을 받아 도박으로 탕진하기까지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위해 법률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전가정법원 2018.10.2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2017. 11. 15.부터 2018. 10. 26.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협의한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부에게 과거양육비 지급 판결

법률구조 2017-431

담당 : 이정민 변호사

사건명 : 과거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56세)과 상대방(남, 54세)은 1992년 9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1(여, 25세), 사건본인2(남, 22세)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폭력 및 경제적 무능력으로 2006년 2월경 협의 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구두 협의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후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또한 사건본인들은 이미 성년에 이르렀으나 사건본인1은 대학교 휴학 중이며, 사건본인2는 대학교 재학 중 군복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고통을 덜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부산가정법원 2018.09.19.)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 지면관계 상 소송구조 결과를 다 실지 못하거나, 게재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2월 11일, 2월 25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19년 1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8월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시	강의제목
2월 28일(목)	2.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관계의 기술
3월 28일(목)	3. 행복과 긍정적인 감정
4월 25일(목)	4. 상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와 권리
5월 23일(목)	5.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갈등
6월 27일(목)	6. 관계를 교정하고 개인을 지키는 부정적 감정
7월 25일(목)	7. 분노의 남용
9월 26일(목)	8. 조정되지 못하는 핵심 상처
10월 24일(목)	9. 부부갈등에 관여하는 부모와의 관계
11월 28일(목)	10. 마음과 언어

감성학교-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하기 : 무료공개강좌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2월 시작)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 정	강 의 제 목	강 사
2월 14일	분노 : 뜻대로 안 되는 세상 뜻대로 살고 싶은 내가 있다	이서원 (한국노동관리 연구소 소장)
3월 14일	친밀감 : 또 다른 나를 만날 때 생기는 기쁨을 찾고 싶다	
4월 11일	불안 : 편안하고 기쁘게 살고 싶어 매일 만나는 내 속 경보기가 있다	
5월 9일	출가분 : 일상의 무거운 짐 아래 크게 숨쉬고 싶은 목소리가 들린다	
6월 13일	우울 : 우울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우애령 (사회복지학 박사, 작가)
7월 11일	평온 : 내 힘으로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기	
10월 10일	희망감 : 단단히 마음먹고 산을 오르게 하는 힘	김희진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11월 14일	고립감 : 혼자 또 같이 충분한 삶	정윤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전문연구원)
12월 12일	소속감 : 연결의 기쁨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19년 3월 29일 (금)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자녀동반 비혼모 가정
- ▶ 장소 : 용인 에버랜드

내 용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 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용인 에버랜드 체험 활동」

♣ 삼성생명의 이웃사랑성금으로 사랑의 열매가 지원합니다.

